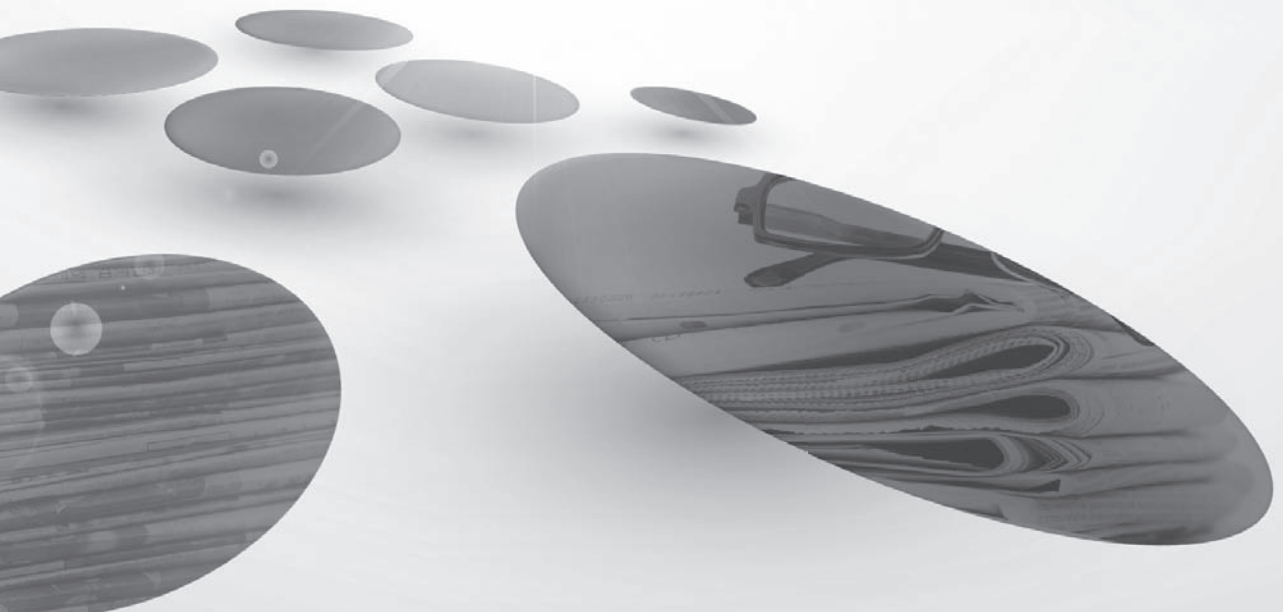


#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 1.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 ▲ 2011-1244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南日報 발행인 박 경 엽

#### <주문>

全南日報 2011년 11월 21일자 5면 「서삼석 출판기념회 성황」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유>

1. 全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돈을 버는 단체장이 되겠다는 목표는 군수 도전의 이유였다. 무안기업도시는 그 포부에서 시작했다. 지역의 미래와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한 도전이었다. 많은 일을 한 것 같은 데 앞을 내다보면 할 일은 더 많다. 여전히 나의 힘은 열정에서 나온다.”

지난 19일 출간한 '서삼석의 열정과 도전:열정은 태산을 넘는다'에 나오는 대목이다. 이 책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경험과 개인사 등 자전적 내용과 공직자로서의 포부와 꿈 등을 담았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서삼석 무안군수가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서삼석 전남 무안군수의 회고록 출판기념회 소식을 전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⑤항에 의하면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허용된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출판기념회가 선거자금을 합법적

으로 모을 수 있는 자리로 변질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기사는 “돈을 버는 단체장이 되겠다는 목표는 군수 도전의 이유였다. 무안 기업도시는 그 포부에서 시작했다…” “선출직에 출마한 다섯 번의 선거 승리엔 결단이 있었다. 민심을 믿고 갔고, 민심을 얻었다” 등 책 소개 형식을 빌어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서 군수에 호의적인 표현 일색인 데다 출판기념회 현장 사진을 눈에 띄게 부각시켜 서 군수에 대한 호감도 확산을 기대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선거를 불과 5개월 정도 앞두고 내부적으로는 총선용 ‘실탄’을 마련하는 한편 조직력을 재정비하고 대외적으로는 세 과시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는 출판기념회를 감성적 표현을 대거 동원하여 대서특필한 것은, 객관적인 정보를 알리는 보도기사가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선거활동을 돕기 위한 홍보성 기사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항(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및 제3조 「보도준칙」 ⑤항(보도 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 ▲ 2011-112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2.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3.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 〈주문〉

중앙일보 2011년 3월 24일자 「대학 상생의 시대」와 3월 31일자 「브랜드 비즈&프랜차이즈」 그리고 4월 7일자 「행복한 결혼」 제하의 섹션, 朝鮮日報 3월 29일자 「조선경제 LIFE」와 3월 31일자 「조선경제 Real Estate」 그리고 4월

13일자 「조선경제 특집 웨딩」 제하의 섹션, 東亞日報 3월 30일자 「병원, 미래도!」와 3월 31일자 「대학, 세계로」와 4월 7일자 「교육기업」 그리고 4월 8일자 「아웃도어」 제하의 섹션, 매일경제 4월 4일자 · 4월 11일자 · 4월 18일자 「TOUR WORLD」 및 4월 6일자 「수익형 부동산」 제하의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유〉

위 적시 신문들은 부동산, 병원, 대학세계화, 교육기업, 아웃도어, 라이프, 결혼, 프랜차이즈, 여행 등 여러 가지 주제로 8~12개 면짜리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색으로 소개하고 해당 상품이나 기업 등의 광고를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제작 방식은 독자나 소비자들에게 기업 또는 상품에 대해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신문의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1-1200 신문윤리강령 위반

###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 〈주문〉

매일경제 2011년 7월 11일자, 7월 18일자, 7월 25일자, 8월 1일자, 8월 8일자 「TOUR WORLD」 섹션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유〉

매일경제는 「TOUR WORLD」라는 위 적시 12면짜리 섹션을 통해 국내외 관광지 소개하면서 ‘△상품정보’ 등을 통해 특정 여행사가 판매 중인 해당 관

광저 여행상품을 상세히 소개했다. 섹션 중간에는 일부 해당 여행사의 광고를 함께 게재했다.

# TOUR WORLD

## 베이징 + 백두산 맞춤 서비스 통해 여행을 디자인한다

제1차 세계대전은 여행업계가 엄청난 계기를 숙면과 고성장기 제공하기 위해 열었다는 말이 있다. 수익이 많은 개인적 취향이 갖는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삼성 카드는 제1차 세계 대전이 여행의 향기를 모은 새로운 개념의 여행 서비스를 시도했다. 주요 관광지 방문을 통해 맞춤형 디자인하는 베이징+백두산 맞춤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리미엄 맞춤형 여행**  
베이징+백두산 맞춤여행은 베이징+백두산 맞춤여행을 디자인하는 맞춤형 여행이다. 베이징+백두산 맞춤여행을 디자인하는 맞춤형 여행이다. 베이징+백두산 맞춤여행을 디자인하는 맞춤형 여행이다.

베이징+백두산 맞춤여행은 베이징+백두산 맞춤여행을 디자인하는 맞춤형 여행이다. 베이징+백두산 맞춤여행을 디자인하는 맞춤형 여행이다. 베이징+백두산 맞춤여행을 디자인하는 맞춤형 여행이다.

**매일경제**  
2011년 7월 11일 월요일



● **프리미엄 맞춤형 여행**  
상위권에서 일대일 맞춤 여행을 통한 베이징+백두산 맞춤여행을 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카드 프리미엄 맞춤여행 상담센터에 문의한다. 1688-4500

〈매일경제 2011년 7월 11일자〉

이 같은 제작 방식은 독자나 소비자들에게 업체 또는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특정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항(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지난 1월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으나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238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東亞日報 2011년 9월 30일자 C1면 「럭셔리 시계를 보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다」 기사의 제목, C2면 「기술+디자인 집약된 명품시계/남자에겐 우주같은 존재」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 날마다 달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문페이스’와 중력에 의한 오차를 보정하는 ‘투르비용’, 시간과 분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를 내보내 소리만 들어도 시간을 알 수 있는 ‘그랜드 소노리’ 등 과잉이라 해도 좋을 정도의 기술력은 남성의 호기심과 소유욕을 자극한다.

심장처럼 뛰는 무브먼트 위에 별처럼 떠 있는 투르비용을 보고 가슴 설레지 않을 남자는 없다.

그 설렘을 등에 업고 남성 고급 시계 시장은 최근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지난해 명품 시계 매출 신장률은 30.9%. 올해 1~8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7%의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신세계백화점도 2009년 55.4%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고, 지난해에는 38.0%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는 ‘Weekend 3.0’ 섹션의 1면 전체와 2면의 절반 가량을 할애해 게재한 위 적시 기사를 통해 남성 명품시계 시장이 최근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 배경과 실태, 대형백화점의 판매전략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그러면서 1면 기사 제목은 「럭셔리 시계를 보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다」, 2면으로 이어진 기사의 제목은 「기술+디자인 집약된 명품시계/남자에겐 우주같은 존재」라고 각각 달았다.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내용 중 일부 표현을 인용한 것이기는 하더라도 독자들의 호기심과 소비심리를 자극할 만큼 상업성이 두드러지도록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지적과 더불어 특정분야 업체들의 영리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있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항(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1-1285 신문윤리강령 위반

##### 충북일보 발행인 변 근 원

#### 〈주문〉

충북일보 2011년 12월 12일자 14면 「남다른 길을 찾는다면 '특성화 학과'에 주목하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충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바야흐로 취업 대란의 시대! 이른바 명문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상위권 대학을 졸업해도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의 상황! 최근 명문대라는 타이틀보다는 특성화 교육이 잘 된 이른바 알짜학과 출신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간판만 보고 대학을 선택하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미래 유망직종

을 생각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여기서 학생들은 특성화 학과에 주목해야 한다! 특성화 학과는 각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모집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만큼 졸업 후 취업걱정이 없는 비전 있는 학과를 말한다! 특정산업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학과로 글로벌한 교육지원과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중략)

영동대학교는 지난 2010년 2월 송재성 총장 취임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본격적으로 '학생중심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2의 도약'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영동대학교는 전체 교직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학생만족도를 끌어올리고, 교수의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여 양적·질적으로 학교를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학과 구조조정과 행정서비스 및 교육환경개선을 일구어 냈다. 그 결과 지난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모집정원 대비 100%를 훌쩍 넘기는 높은 실적을 거두며, 예년평균 2,600여명 수준에서 머물던 재학생 수가 3,000명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획특집 기사는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특성화 학과 중심의 충북 영동 소재 영동대학교를 한 개 면 전체를 할애하여 집중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영동대 '제2의 도약' 위해 비상>이라는 지면 제목 아래 △학교 이름과 마크를 제목으로 부각시키고 △최상급 표현을 사용한 소재목들을 많이 뽑은 데다 △같은 면 하단에 5단 통광고를 실어 전면광고 이상의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꾸몄다.

대학이 공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증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보다 특정 대학이 알리고 싶어하는 내용을 장점 일색으로 소개한 위 기사는 보도 기사가 아니라 홍보성 기사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항(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5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2.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4.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응
5.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6.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서울경제 2012년 2월 23일자 「활짝피는 봄 분양」 섹션과 3월 15일 「Wedding」 섹션, 중앙일보 2월 24일자 「부동산」 섹션과 2월 29일자 「주고 싶은 선물」 섹션 그리고 3월 13일자 「Watch」 섹션 및 3월 15일자 「아웃도어 스타일」 섹션과 3월 19일자 「식음료 트렌드」 섹션, 매일경제 2월 28일자 「수익형 부동산」 섹션과 3월 5일자·12일자·19일자 「TOUR WORLD」 섹션 그리고 3월 7일자 「Life & Fun」 섹션 및 3월 15일자 「봄옷 입은 가구·인테리어」 섹션, 한국경제 2월 29일자 「Health」 섹션과 3월 15일자 「Real Estate」 섹션 그리고 3월 16일자 「2012 바젤월드」 섹션, 朝鮮日報 3월 7일자 「선물」 섹션·7일자 「아웃도어」 섹션과 3월 8일자 「전문 진료 특화 병원」 섹션·8일자 「Real Estate」 섹션 및 3월 9일자 「대학 융합 연구」 섹션과 3월 12일자 「국립 목포대학교」 섹션·12일자 「2012 바젤월드」 섹션 그리고 3월 14일자 「프랜차이즈」 섹션, 東亞日報 3월 15일자 「골프&레저」 섹션과 3월 16일자 「Home & Dream」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위 6개 신문들은 부동산, 결혼, 골프, 시계, 아웃도어, 식음료, 여행, 라이프, 가구, 건강, 병원, 선물, 대학, 프랜차이즈 등 여러 가지 주제로 8~12개 면짜리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색으로 소개하고 해당 상품이나 기업 등의 광고를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제작 방식은 독자나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신문의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한 다른 기사들

(www.ikpec.or.kr 참조)

결정번호	신문사명	게재일		결정
2011-1120	朝鮮日報	11 03 30	「2011 바젤월드」 섹션	주의
	매일경제	11 04 06	「Watches in Snow」 섹션	”
	한국경제	11 04 07	「바젤 시계박람회」 섹션	”
2011-1146	매일경제	11 04 25 외	「TOUR WORLD」 「Wedding」 섹션 외	주의
	경향신문	11 04 28	「채테크 특집」 제하의 섹션	”
	東亞日報	11 04 28	「Love & Gift」 제하의 섹션	”
	朝鮮日報	11 05 03 외	「가정의 달 선물/Family & Love」 섹션 외	”
	중앙일보	11 05 04	「주는 정 받는 기쁨」 섹션	”
	한국경제	11 05 06 외	「우리회사 장수 브랜드」 섹션 외	”
	영남일보	11 05 11	「2011新주거 트렌드」 부동산 특집	”
2011-1174	朝鮮日報	11 05 24 외	「커피」 섹션 외	주의
	중앙일보	11 05 26 외	「꿈의 커피를 찾아서」 섹션 외	”
	東亞日報	11 05 30 외	「Home & Dream」 섹션 외	”
	매일경제	11 05 30 외	「TOUR WORLD」 섹션 외	”
	서울경제	11 05 31	「6월 분양대전」 섹션	”
	한국경제	11 06 02 외	「농협이 바뀐다」 섹션 외	”
2011-1201	朝鮮日報	11 07 13 외	「전문병원 여름에 가자」 섹션 외	주의
	중앙일보	11 07 20	「건강한 당신/여름방학 · 휴가철 특집」 섹션	”
	한국경제	11 07 20 외	「신용카드로 알찬 여름휴가」 섹션 외	”
2011-1217	매일경제	11 09 05 외	「TOUR WORLD」 섹션	경고

결정번호	신문사명	게재일		결정
2011-1218	한국경제	11 08 26 외	「Real Estate」 섹션 외	주의
	朝鮮日報	11 08 29 외	「University」 섹션 외	''
	東亞日報	11 08 30 외	「Home & Dream」 섹션 외	''
	서울경제	11 08 31	「기다려라! 가을 필드」 섹션	''
	매일경제	11 09 07 외	「가을 분양」 섹션 외	''
2011-1239	매일경제	11 10 04 외	「TOUR WORLD」 섹션	경고
2011-1240	중앙일보	11 09 27 외	「글로벌 캠퍼스」 섹션 외	주의
	朝鮮日報	11 09 28 외	「University 섹션」 외	''
	한국경제	11 09 29 외	「Leisure &」 섹션 외	''
	파이낸셜뉴스	11 09 30	「Golf is Life」 섹션	''
	매일경제	11 10 05 외	「10월 분양 大戰」 섹션 외	''
	한국일보	11 10 13	「부산·울산·경남 명품시대」 섹션	''
東亞日報	11 10 14	「Home & Dream」 섹션	''	
2011-1266	매일경제	11 11 07 외	「TOUR WORLD」 섹션	경고
2011-1267	매일경제	11 10 26 외	「'알짜 내 집 마련' 신도시를 노려라」 섹션 외	주의
	서울경제	11 10 26	「가을 필드가 부른다」 섹션	''
	朝鮮日報	11 10 26 외	「Outdoor」 섹션 외	''
	한국경제	11 10 27 외	「Leisure &」 섹션 외	''
	東亞日報	11 10 28 외	「Home & Dream」 섹션 외	''
	중앙일보	11 10 28 외	「부동산」 섹션 외	''
2011-1286	한국경제	11 11 29	불스원샷, 업계 첫 녹색기술 인증	주의
2011-1287	매일경제	11 12 05 외	「TOUR WORLD」 섹션	경고
2011-1288	중앙일보	11 11 23 외	「winter&」 섹션 외	주의
	한국경제	11 11 23	「Leisure&」 섹션	''
	매일경제	11 11 24 외	「국민과 함께 KB금융」 섹션 외	''
	朝鮮日報	11 11 29 외	「LIFE 섹션」 외	''
	東亞日報	11 12 01 외	「Industrial Review」 섹션 외	''
2012-1012	매일경제	12 01 02 외	「TOUR WORLD」 섹션 외	주의
	중앙일보	12 01 06 외	「2013 새로운 도전/기숙학원 특집」 섹션 외	''
	한국경제	12 10 10	「Real Estate」 섹션	''
	朝鮮日報	12 01 12	「Real Estate」 섹션	''
2012-1031	東亞日報	12 02 09 외	「꿈이 익는 기숙학원」 섹션 외	주의
	매일경제	12 01 30 외	「TOUR WORLD」 섹션	''
	朝鮮日報	12 01 30 외	「채수생을 위한 기숙학원」 섹션 외	''
	중앙일보	12 02 09 외	「부동산」 섹션 외	''
	한국경제	12 02 13	「Real Estate」 섹션	''

### 3. 차별과 편견의 금지

#### ▲ 2011-1242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일보 발행인 유 종 관

##### <주문>

세계일보 2011년 10월 20일자 10면 「동성애 조장이 학생인권보호냐?」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학생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됐다. 지난달 초안 공개 때 논란이 된 조항은 유지되고 민감한 조항이 추가돼 시교육청이 어떤 안을 확정지을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가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지난주 교육청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수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7조 ①항(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시민단체가 제출한 주민발의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일부 종교계 등이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하지만 자문위는 이미 시행 중인 경기도는 물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광주광역시도 조례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접근,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동성애 학생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한 뒤 결정하기 위해 초안에선 논의를 유보했던 것이고 초안 발표 이후 상황을 파악해보니 매우 심각했다"며 "종교단체의 반발도 있지만 선악의 판단 이전에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는 시각에서 학교가 무관심해

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가 교육청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 중 학생인권을 강화, 수정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 수정 조례안은 기존 7조 1항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사회일각에서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을 둘러싼 논란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다른 내용도 다루었다.

그러나 편집자는 이 기사의 제목을 ‘동성애 조장이 학생인권보호냐?’라고 단정적이고도 선정적으로 뽑았다. 이는 기사 내용과도 초점이 맞지 않으며 나아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